주식회사 쌍용씨앤비
공정경쟁 정책(안)

1. 총칙

가) 목적

㈜쌍용씨앤비(이하 '회사'라 함)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경쟁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정당한 이윤을 추구함으로써, 회사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정책을 제정·시행한다

나) 임직원의 의무

회사의 임직원은 본 정책과 경쟁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공정경쟁 실천을 이행하기 위하여 모든 사업 수행과정에서 책임있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임직원은 회사와 거래하는 협력사에 대해서도 본 정책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다) 적용 범위

본 정책은 업무 수행 장소, 역할, 지위와 관계없이 회사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하며, 정규직·계약직 등 고용형태를 불문한다.

라) 목표

회사는 본 정책을 통하여 공정경쟁 관련 법령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필요한 교육과 점검 등을 정기적으로 수행한다.

2.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가) 기본원칙

회사는 계약·협정·결의 또는 그 밖의 여하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지 않는다.

나) 부당한 공동행위의 내용

부당한 공동행위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②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③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④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⑤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⑥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거래 시에 그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⑦ 영업의 주요 부문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거나 수행·관리하기 위한 회사 등을 설립하는 행위

다) 부당한 입찰·경매의 내용

부당한 입찰 또는 경매 행위는 입찰 또는 경매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① 낙찰자, 경락자, 입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② 낙찰 또는 경락의 비율
③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
④ 기타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 요소가 되는 사항

라) 기타 방법의 부당한 공동행위 내용

회사는 나)와 다) 이외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제한하거나, 가격·생산량·원가·출고량·재고량·판매량·거래조건·대금·대가지급조건 등의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3.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가) 기본원칙

회사는 아래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지 않는다.

나) 거래거절

정당한 이유없이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또는 부당하게 단독으로, 특정사업자에게 거래 개시를 거절하거나,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다) 차별적 취급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부당하게 가격 또는 거래조건을 차별하거나, 계열회사를 위하여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을 현저하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하거나, 집단으로 특정사업자를 부당하게 차별 취급하여 그 특정사업자 사업활동을 현저하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하는 행위

라) 경쟁사업자 배제

정당한 이유없이 회사의 상품 또는 용역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여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거나 또는 부당하게 통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여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마) 고객유인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 제공으로 유인하거나, 위계의 방법으로 유인하거나 또는 기타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하여 경쟁사의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

바) 거래강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거나, 부당한 조건 등 불이익을 제시하여 거래하도록 강제하거나 또는 임직원에게 회사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사) 거래상 지위의 남용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구입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거나, 금전·물품 등의 경제상 이익 제공을 강요하거나, 거래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불이익이 되는 거래조건을 설정· 변경 또는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또는 거래상대방의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

아) 구속조건부 거래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자) 사업활동 방해

다른 사업자의 기술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상당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채용하여 다른 사업자

의 사업활동을 상당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4. 하도급거래에서의 공정경쟁 준수

가) 기본 원칙

회사는 하도급거래를 함에 있어서 아래 각 항의 금지행위를 위반하지 않도록 준수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나) 대금지급의 준수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감액금지),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및 제17조(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에 따른 하도급 대금 지급 방법 등에 위반되는 행위

다) 부당한 특약의 금지

계약서, 약정서 등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전가시키거나, 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전가하거나,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하여 비용을 추가 부담시키는 행위

라)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하도급 목적물과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을 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마)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제조 등 위탁 후 거래상대방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제조 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목적물의 납품 수령 내지 인수를 거부 또는 지연하는 행위

바) 부당 반품의 금지

목적물을 납품받은 후 거래상대방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목적물을 거래상대방에게 반품하는 행위

사) 부당결제 청구의 금지

거래상대방에게 위탁 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구매하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로서, 하도급 대금 지급기일 전에 구매대금이나 사용대

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를 지급하게 하는 행위

아) 보복조치의 금지
거래상대방이 경쟁 관련 법령 위반을 이유로 신고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또는 서면실태조사에 따른 자료 제출을 이유로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수주기회 제한, 거래 정지,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

자) 탈법행위의 금지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하도급법령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

5. 인수합병

가) 회사는 다른 사업자를 인수하기 전에 법적 위험요소를 발견하고 해소될 수 있도록 적절한 수준의 실사를 실시한다.

나) 회사는 인수한 회사에 대해 조기에 직원의 준법교육, 점검·모니터링 등 내부 통제 및 각종 필수 정책이나 프로세스를 정착시킨다.

6. 점검 및 교육

가) 점검 및 교육 담당 부서는 법무지원팀으로 하되, 대표이사는 필요 시 관련 부서로 하여금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나) 대표이사는 법무지원팀 또는 관련 부서로 하여금 하도급거래 등에 있어 공정경쟁 관련 법령 위반 여부 등의 점검(이하 '점검'이라 함)을 년 1회 이상 실시하게 한다.

다) 점검은 매년 1분기 내에 전년도 거래처와 해당 거래 내역을 전반적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하며, 점검 방식은 회사 내부 점검과 협력사를 상대로 한 점검의 방식으로 진행하되, 회사 내부 점검으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을 협력사를 상대로 확인한다.

라) 협력사 점검은 보복조치 등의 방지와 참여율 향상을 위하여 무기명 설문 방식으로 진행하고, 설문 내용에는 회사와 거래과정에서의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 및 회사 임직원의 부패나 비리에 관한 제보 내용이 포함되도록 한다.

마) 점검 결과 공정경쟁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을 발견하거나, 협력사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회사 임직원의 부패나 비리의 제보가 있는 경우, 점검 담당 부서는 그 내용을 조사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한 후 적절한 개선 조치를 실시하거나, 담당부서로 하여금 이를 조치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바) 점검 담당 부서는 매년의 점검 결과를 기록 및 데이터화함으로써, 공정경쟁 관련 법령 위반, 불공정거래행위 및 임직원의 부패·비리 등의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응방안을 강구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사) 법무지원팀은 공정경쟁 관련 법령 중 필요한 내용에 대해 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하며, 교육 자료와 일지를 정리하여 보관한다.

7. 제칙

가) 제보

임직원은 본 정책이나 경쟁 관련 법령의 위반 또는 위반가능성을 발견하거나 인지한 경우 즉시 감사 부서 또는 법무지원팀에 신고하여야 하며, 감사 부서 또는 법무지원팀은 신고 내용을 조사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위반 시 조치

임직원이 본 정책을 위반한 경우, 취업규칙 등 내부기준 및 절차에 따른다.